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38 발의연월일: 2025. 1. 20.

발 의 자:김승원·박선원·박정현

김문수 • 이광희 • 박해철

임호선 · 한준호 · 서미화

이재강 • 서영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.

이에 「형법」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 안번호 제763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

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편제1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가석방의 제한)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「형법」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을 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석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0조의2(가석방의 제한) 이 장
	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
	「형법」 제72조에 따른 가석
	<u>방을 하지 아니한다.</u>